

KATS
국가기술표준원

KASTO
한국계량측정협회

계량종합관리시스템

www.metrology.kr



kg

L

kWh



당신의 행복을 계량합니다

2015년부터 달라지는 계량제도



KATS
국가기술표준원

KASTO
한국계량측정협회

계량은 모든 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서로의 약속이자, 믿음입니다.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합니다.

미소 짓는 상거래,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계량을 위해
2015년 계량제도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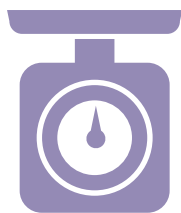
Contents

- 01. 제조결함 계량기, 이제는 리콜 제도로 관리합니다.
- 02. 불법조작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 03. 소비자 자율감시 제도로 계량기 관리 감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04.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05. 단위와 양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2015년부터 달라지는 계량제도

01 계량기의 결함, 이제는 리콜 제도로 관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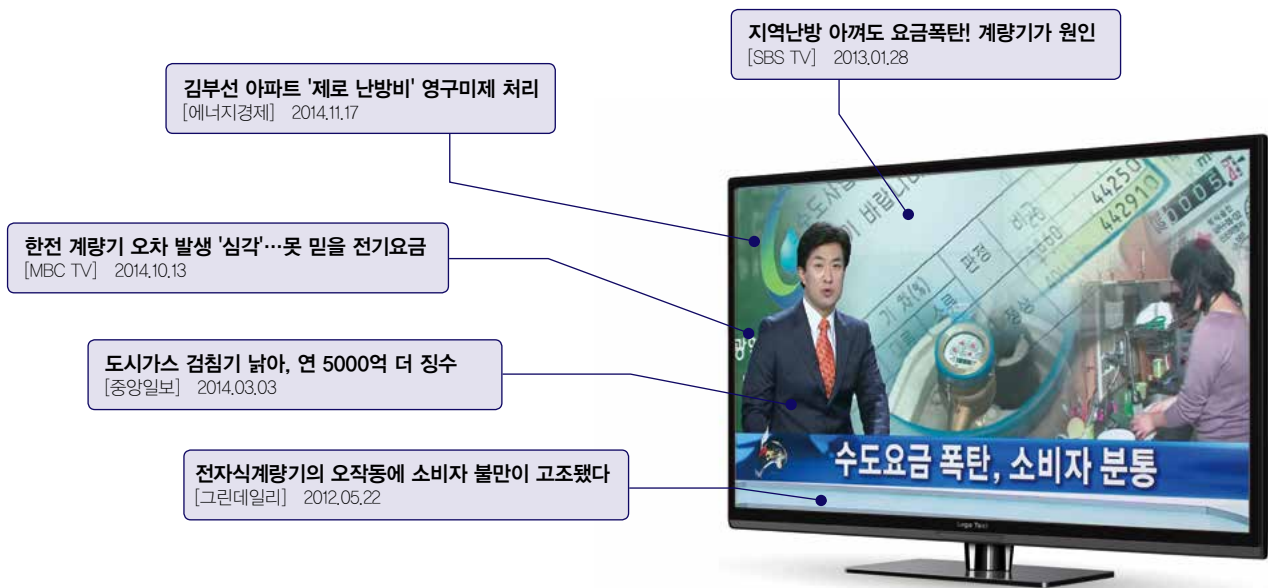
결함이 있는 계량기는 신속히 시정조치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법 제 22조)

이래서 달라졌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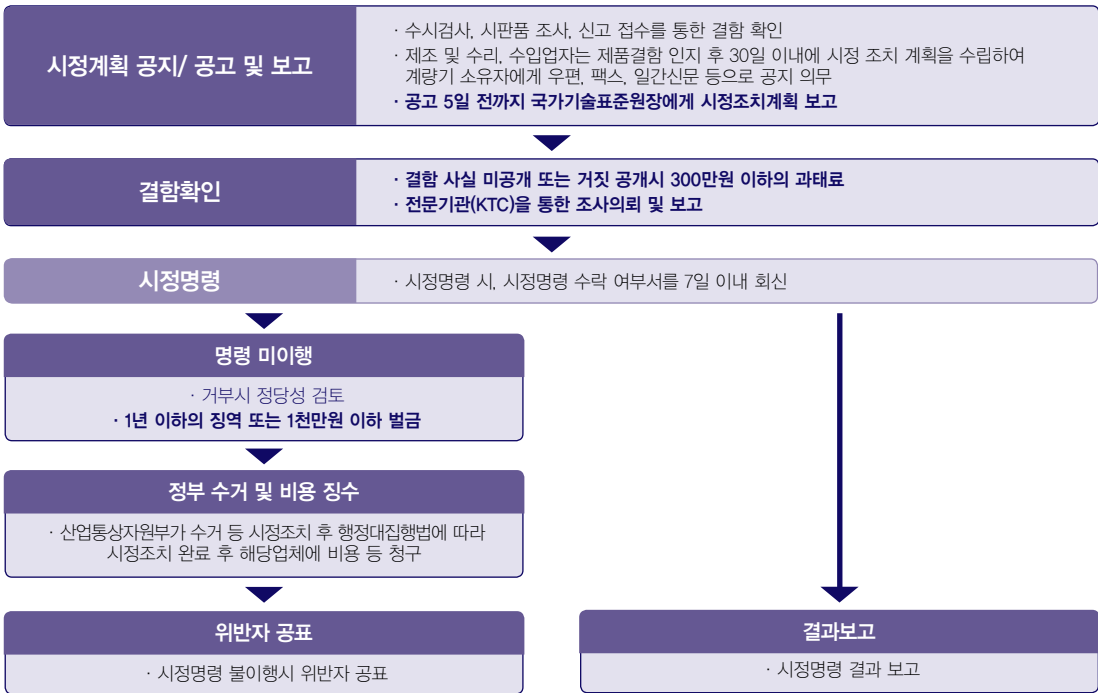
- 그동안 제조상의 이유로 계량기에 결함이 발생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시정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결국, 결함이 있는 계량기는 장기간 방치되어 각 가정의 요금 과다 청구, 계량기 불신, 이웃 간의 분쟁 등 많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 제조상의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는 신문에 광고하여 알리고 리콜조치 등 계량기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계량기 제조사가 시정 불이행시 산업통상부장관이 직접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제조·유통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결함확인 (리콜제도)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계량기의 결함, 리콜제도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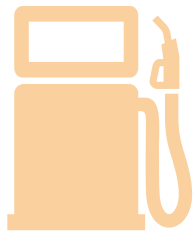
웹툰으로 보는 계량뉴스

01



2015년부터 달라지는 계량제도

02 불법조작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 계량기 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과징금 (최고 2억원)을 부과하겠습니다. (법 제55조)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계량기를 만들거나 조작한 불법 불량 사업자 정보를 언론 등에 공개하겠습니다. (법 제51조)

이래서 달라졌군요?

- 계량기 조작으로 발생하는 불법이익금이 벌금 (3천만원) 보다 크기 때문에 업체들의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또한, 소프트웨어 변조와 조작 행위가 지능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계량기 조작 뒷돈 행진 배관공 구속
[경인일보] 2014.09.02

주유기 조작 '7초면 똑딱' 82억 가로채
[매일경제] 2014.03.12

주유기 조작해 정량보다 적게 주유
[파이낸셜뉴스] 2014.03.12

활어시장, 생선회 저를 눈속임은 당연한 일?
'소비자 바보취급'
[티브이데일리] 2010.12.02



웹툰으로 보는
계량뉴스

02



어떻게 달라졌나요?

1. 부당이득 과징금 부과

- 계량기 조작으로 발생된 불법 이익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당이득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부과기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경우 : 최대 4천만원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 최대 2억원

2. 불법불량 사업자 명단공개

- 불법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조작 사업소에 대한 명단을 공표합니다.

불량사업자 명단 확인은?

- 불량사업자 공표매체

계량종합관리시스템 (www.metrology.kr)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www.kats.go.kr)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계량기 불법조작을 근원적으로 방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정한 상거래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2015년부터 달라지는 계량제도

03

소비자 자율감시 제도로 계량기 관리 감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계량기의 불법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계량기 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법 제5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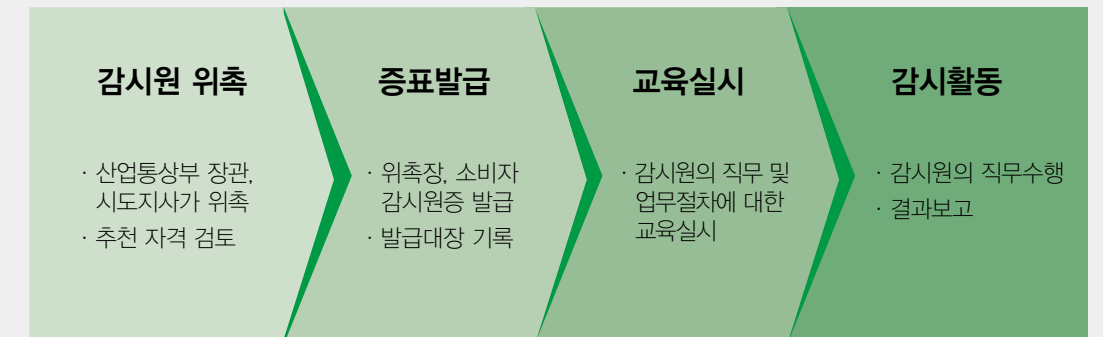
이래서 달라졌군요?

- 계량검사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법정계량기 및 정량표시상품의 수는 매우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합동단속반 운영 시 협회, 시민단체 감시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현실적인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 보다 철저한 계량기 검사를 위해, 소비자감시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소비자감시원이 계량 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활동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소비자감시원 운영



소비자감시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 비법정 단위의 사용 여부 확인
- 계량기의 재점검 및 정기검사의 여부 확인
- 정기검사 및 합동 단속업무 지원
- 제품결함 시정조치 여부 확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자율감시제도! 가족의 피해를 방지하는 마음으로,
더욱 철저한 계량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웹툰으로 보는
계량뉴스

03



2015년부터 달라지는 계량제도

04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계량기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법 제56조)

이래서 달라졌군요?

- 지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량기 불법조작은 끊임없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 철저한 관리감시와 인력부족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소비자 감시원 제도와 함께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 2015년부터는 계량기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50만원, 계량기를 변조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불법계량기 신고 Tip

신고대상 및 포상금

1.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 **50만원** 이하
2.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는 행위 **100만원** 이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단속업무 담당자 신고 – 연간 지급건수 (3회) 초과
- 타인명의 신고
- 익명신고
- 의도적으로 위반을 조장하여 신고

신고처

- 계량종합관리시스템 www.metrology.kr
- 한국계량측정협회 02-3489-1300
- 공익신고자보호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시민들이 직접 단속하는 불법계량 현장! 당신의 참여가 불법계량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웹툰으로 보는
계량뉴스

04



2015년부터 달라지는 계량제도

05

상거래에 사용되는 **단위와 제품의 양**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 비법정단위 상습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조치를 통해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추진합니다. (법 제 6조)
- 정량표시상품의 범위를 길이, 면적 단위 표시상품까지 확대하여 양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법 2조)

법정단위 사용 정착으로 공정한 상거래 유도

이래서 달라졌군요?

- 비법정단위 사용자의 위반행위를 개선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 부정확한 단위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 비법정단위 사용자에 대해 표시정정 및 개선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시·도지사 뿐 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단속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5 %가 사용하는 쉽고 정확한 법정단위! 올바른 법정단위 사용으로 생활이 편리해 집니다.”

정량표시상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상품

k마크 제도
사업자 스스로 제품의 양이 정량임을 선언하는 제도

▶ 정량 미달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 개수·면적 단위
제품 예시

길이·개수·면적 단위로 표시된 상품에 대한 정량관리 강화

이래서 달라졌군요?

- 질량, 부피로 표시된 상품만 관리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길이, 개수 면적으로 표시된 상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 이미 주요 OECD 국가들은 면적, 개수 상품의 정량관리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 정량표시상품을 길이, 면적, 개수로 표시된 상품 (기존 : 질량, 부피상품)까지 확대했습니다.
- 정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개선 후 개선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 k마크 상품 (자기적합성선언상품)을 확산 하겠습니다.

정량표시	주요품목
개수	일회용품 (접시, 컵, 커피스틱/ 필터, 젓가락/ 스푼) 위생용품 (냅킨/ 키친타올, 위생장갑), 가정용품 (물티슈/ 세정티슈, 일회용기저귀) 일회용밴드, 모기약 (모기향, 흠매트) 등등
길이·면적	화장지, 호일, 랩 농업용품 (농업용 필름, 방수포), 가정용품 (벽지/ 시트지, 장판지, 카페트/ 바닥재)

“철저한 정량관리로 양이 부족한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웹툰으로 보는
계량뉴스

05



불법 계량이 사라지고, 웃음이 커져갑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울의 값이나
상품의 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
정확한 계량기 관리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